



# 국세청 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6.(일) 12:00	배포 일시	2022. 11. 6.(일) 10:00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 윤성호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 안경민 (044-204-3252)

##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.

-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-

□ (개요)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\*은 2022. 11. 30.(수)까지입니다.

\*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(납부기한 2023. 1. 31.(화))

□ (세정지원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(2022년 1분기), 태풍(‘힌남노’) 피해지역 납세자(9만 3천 명, 2,793억 원)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(2023. 2. 28.)합니다.

○ 또한,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□ (중간예납 추계액 신고)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\*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. 11. 30.(수)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습니다.

\*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

○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#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

### 중간예납 대상자

-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140만 명입니다.
-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\*하였으며, 해당 사업자는 2022. 11. 30.(수)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\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(로그인 > My홈택스 > 고지)
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.(붙임 1)

- ▶ 이자·배당·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
- ▶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
- ▶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, 2022. 6. 30.이전 휴·폐업한 사업자 등

※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

### 중간예납세액

-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(2021년 귀속)의 종합소득세액(중간예납 기준액)의 1/2이며,
-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(2023년 5월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)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.

중간예납세액	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(=중간예납기준액)×1/2
* 중간예납기준액 =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+ 확정신고 납부세액 + 결정·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- 환급세액	

\*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·납부세액을 차감함

## 중간에납 분납

-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. 1. 31.(화)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.

- ✓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: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
- ✓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: 고지세액의 50% 이하 금액

### |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|

구 분	중간에납세액	11월 납부세액 (2022. 11. 30.)	1월 분납세액 (2023. 1. 31.)
사례 1	12,500,000원	10,000,000원	2,500,000원
사례 2	20,000,000원	10,000,000원	10,000,000원
사례 3	35,000,010원	17,500,010원	17,500,000원

## 납부 방법

- 홈택스·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,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\*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,
  - \*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 [인터넷은행(카카오뱅크, K뱅크), 증권사,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]
-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(붙임 2)

### | 홈택스·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|

<b>홈택스</b> (www.hometax.go.kr)	신고/납부 → 세금납부 → 국세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<b>손택스</b> (모바일앱)	신고/납부 → 국세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1. 과세구분에서 '고지문'을 선택
2. '납부할 세액' 전액을 '납부세액'에 입력
3. 전자납부시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필요

-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. 11. 30.(수)까지 납부하고,
  -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. 1. 31.(화)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
## 2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

### 납부기한 직권연장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(2022년 1분기), 태풍('힌남노')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(2,793억 원)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(2023. 2. 28.)합니다.

구 분	지 원 대 상
1	손실보상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(2022년 1분기)을 보상받은 소상공인(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)</li> <li>- 다만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</li> </ul>
2	특별재난지역 납세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태풍('힌남노')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*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</li> <li>* (경북) 포항·경주시, (울산) 울주군 온산읍·두서면, (경남) 통영시 옥지면·한산면, 거제시 일운면·남부면</li> </ul>

-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'납부기한 직권연장'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「납부고지 유예 통지서」를 발송하였으며(붙임 3·4),
  - 내년 2월 초,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2023. 2. 28.(화)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 -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. 1. 31.(화)에서 2023. 5. 2.(화)로 자동 연장됩니다.
- 또한, 2022. 10. 29.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,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(2023. 2. 28.)합니다.

### 신청에 의한 연장

-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(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)
  - ※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(붙임5)

###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

####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○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<sup>1)</sup>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, 상반기(2022. 1. 1. ~ 6. 30.)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. 11. 30.(수)까지<sup>2)</sup>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·납부할 수 있습니다.

- 1)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(중간예납기준액)의 30%에 미달
- 2)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(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)

※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.

- 또한,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#### |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|

업종	직전 연도(2021년 귀속) 수입금액
광업, 도·소매, 부동산매매업 등	3억 원 이상
음식, 숙박, 제조, 건설, 금융업 등	1억 5천만 원 이상
서비스, 보건, 부동산임대업 등	7천 5백만 원 이상

\* 변호사, 의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(소득세법 시행령 §208)

####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

○ 홈택스(컴퓨터)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,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.(붙임 8·9)

홈택스 (www.hometax.go.kr)	신고/납부 ⇒ 세금신고 ⇒ 종합소득세 ⇒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손택스 (모바일앱)	신고/납부 ⇒ 종합소득세 ⇒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- 전자신고 운영기간 : 11. 1. ~ 11. 30. (매일 06:00 ~ 24:00)

- 전자납부 운영기간 : 11. 1. ~ 11. 30. (매일 00:30 ~ 23:30)

\* 신용카드 납부 포함,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:00 ~ 23:30(붙임 2)

### 4 「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」 제공

####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

○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11. 1.(화)부터 「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\*」를 제공합니다.

\*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-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<sup>1)</sup>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<sup>2)</sup>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- 1) 접수, 발송, 배달준비, 배달완료 등 국세고지서 배송상황 확인 가능
  - 2) 경비실,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 선택 가능
- 다만,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현관 앞, 기타는 선택 불가

#### 사전 신청 필요

○ 「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」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(컴퓨터)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.(붙임 6·7)

- 납세자는 홈택스(손택스) ①로그인 후 ②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③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(제3자)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되고,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(우체국 알림톡)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바랍니다.

#### |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및 활용 방법 |

담당 부서 <총괄>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 윤성호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 안경민 (044-204-325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 고영일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전영호 (044-204-2552)



##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

1. 2022. 1. 1.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(소법§65①)
2. 다음에 해당하는 자(소득세 사무처리규정 §76)
  - 가. 중간예납기간 종료일(2022. 6. 30.) 이전에 휴·폐업한 경우(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)와
  - 나.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3.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(소령§123, 소칙§64)
  - 가. 이자소득·배당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
  - 나.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(2021년 개정)
  - 다. 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  - 라.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(수시부과결정)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
    - \* 수시부과결정 :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
  - 마.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
    - (1)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업술가
    - (2)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
  - 바.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·증권매매의 권유·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
  - 사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(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)
  - 아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  - 자.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「주택법」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4.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(소법§68)
5. 중간예납기간 중(2022. 1. 1.~ 6. 30.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·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(소법§65⑩)
6.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(소법§86)




**붙임 2**


**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**

구분	주요 내용
전자납부 (PC)	○ 국세청 <b>홈택스 납부</b> 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) -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→ '고지분' 선택 -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-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:00 ~ 23:30
	○ 금융결제원 <b>인터넷 지로</b> (www.giro.or.kr) 이용시간
	00:30~23:30 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, 국민 07:00~23:30 산업, 우리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
신용카드 납부	○ 접근 방법 : <b>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</b> (www.cardrotax.kr)
	○ 카드납부 시간 : 00:30~23:30(연중 무휴)
	○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(납세자 정보, 세목, 납부금액 등)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
	○ 신용카드 <b>납부대행 수수료</b> 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. ○ 세무서는 업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
모바일 납부 (스마트폰)	○ 국세청 <b>손택스 납부</b> 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) -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→ '고지분' 선택 -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-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:00 ~ 23:30
	○ 금융결제원 <b>모바일 지로</b> 이용시간
	00:30~23:30 농협은행, 신한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, 국민 07:00~23:30 산업, 우리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한
	○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' <b>국세계좌</b> ' 또는 ' <b>가상계좌</b> '로 이체하여 납부(분납)도 가능
금융기관 · 우체국에 직접납부	○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<b>납부</b> - 이용 시간 : 2022년 11월 30일(수)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- 중간예납 고지서(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)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·납부

**붙임 3**

**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**





'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

**코로나19·태풍 피해 극복!! 국세청이 함께 하겠습니다.**  
 '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\*해 드립니다  
 \* 당초 납부기한: '22. 11. 30.(수) → 연장된 납부기한: '23. 2. 28.(화)

-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'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드립니다.
-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 내년 2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'23.2.28.(화)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
당초 납부기한	연장된 납부기한
'22.11.30.(수)	'23.2.28.(화)

- 내년 2.28.(화)까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납세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  
- 아울러,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'23.1.31.(화)에서 '23.5.2.(화)로 자동 연장되며, 분납한 사업자에게는 내년 4월 초에 분납분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드립니다.
-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(중간예납 추계액 신고)할 수 있습니다.  
-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'22.11.30.(수)까지이며,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. 추계액 신고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 
(경로) 국세청 홈페이지 > 국세신고안내 > 종합소득세 > (좌측)중간예납 안내
- 모포록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시고,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

## 세 무 서

수신자  
(경유)

제 목 **납부고지 유예 통지**

귀하(귀사)의 납부고지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).

납세자	성 명 (상 호)	주 소 (사업장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			
신 청 일	중간에납 고지 유예	승인여부	직권승인						
승인(기각) 사유		코로나19 · 태풍피해 지원							
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국세의 내용 (단위: 원)									
세 목	납부기한	세목코드 발행번호	계		내국세	농어촌 특별세	교육세	가산금	
			연도 · 기분						
종합소득세	2022-11-30	202211-7-10	2022년			0	0	0	
납부고지 유예 기간			2022년 11월 1일 ~ 2023년 1월 31일						
분 납 금 액 및 횟 수 (단위: 원)									
횟수	세 목	납부기한	세목코드 발행번호	계		내국세	농어촌 특별세	교육세	가산금
				연도 · 기분					
1	종합소득세	2023-02-28	202302-7-10	2022년			0	0	0
계									

### 세 무 서 장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 (전화: 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김도자 결재권자

협조자 시행 접수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  
전화( ) 전송( ) / 공개구분

## 붙임 4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

### 홈택스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후 「My홈택스」 선택
  - 홈택스 첫 화면의 상단 좌측 「My홈택스」 버튼 또는 오른쪽 바로 가기에서 「My홈택스」 선택



-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(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지 않은 납세자)는
  - ① 「고지」 선택하여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
  - 중간예납 직권 연장 사업자(납부기한이 2023. 2. 28.(화)까지 연장)는
    - ② 「우편물 발송 내역조회」 선택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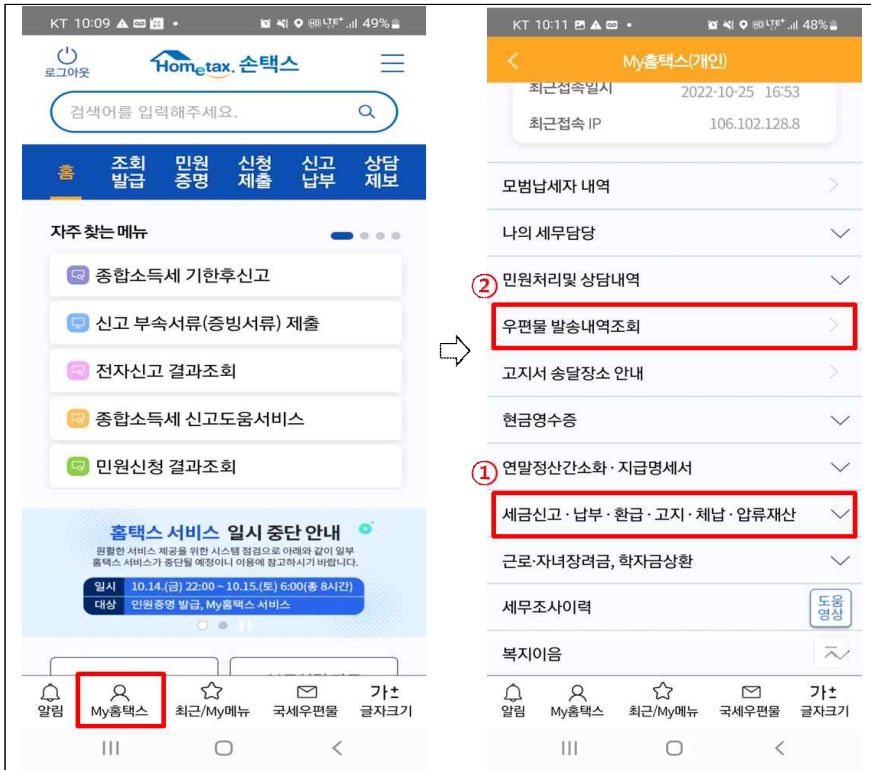


## 손택스

○ 손택스(모바일 앱) 로그인 후 하단 「My홈택스」 누름

-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(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지 않은 납세자)는  
 ①「세금신고·납부·환급·고지·체납·압류재산」 누름 → 상단 중앙 「고지」 누름

- 중간예납 직권 연장 사업자(납부기한이 2023. 2. 28.(화)까지 연장)는  
 ②「우편물 발송 내역조회」 눌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



## 붙임 5

##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

### 홈택스

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후 상단 메뉴 '신청/제출' 클릭

2. '(좌측) 신청/제출' 클릭 후 하부 메뉴 중 '일반세무서류 신청' 클릭

3. '민원명 찾기'에 ①'납부기한'을 입력 → ②'[조회하기] 버튼 클릭 → '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(구.정수유예) 신청'의 신청구분 ③'[인터넷신청] 클릭

일반세무서류신청

- 홈택스(인터넷)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 「인터넷신청」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세요.

① 민원목적조회

민원유형:  민원명 찾기:  1

세목:  신청구분:  2

조회하기

총 5건이 조회되었습니다.

번호	민원유형	민원사유명	소관부서	세목	신청서식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;">3</span> 신청구분
1	승인	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(구.정수유예)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;">인터넷신청</span>
2	승인	납부기한등 연장(정수유예)의 적용특례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세무서신청
3	승인	납부기한연장 직권승인	기타	해당없음	없음	세무서신청
4	승인	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인터넷신청
5	승인	재기중 소기업인의 납부기한등 연장(정수유예)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세무서신청

# 손택스

**1. 손택스(모바일앱) 로그인 후 상단 메뉴 '신청/제출' 클릭**

**2. '세무서류신청-공통분야' 클릭**

**3. '세무서류신청-공통분야' 하부 메뉴 '일반세무서류 신청' 클릭**

**4. '민원명찾기'에 '납부기한' 입력 → '조회하기' 클릭 → '고지번호 납부기한 등 연장(구.징수유예) 신청'의 '모바일신청' 클릭**

# 붙임 6

# 「고지서 배달 알림」 이용 신청방법

## 홈택스

○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한 신청방법

① 홈택스 접속 → ② 회원정보 클릭 →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(확인 및 수정) →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(제3자) 제공\* 동의 → ⑤ 회원정보 수정

## 손택스

○ 손택스(모바일앱)를 이용한 신청방법

① 손택스 접속 → ② 메뉴 > 나의정보 > 회원정보 수정 →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(확인 및 수정) →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(제3자) 제공\* 동의 → ⑤ 회원정보 수정



**붙임 7**

**「고지서 배달 알림」 이용 절차**

### ① 배달 알림톡 수신

### ② 배달 알림톡 열람 (상세보기 클릭)

### ③ 배달상황 조회 (인터넷우체국, 우편 앱)

### ④ 수령장소 선택 가능 (인터넷우체국, 우편 앱)

※ 등기우편은 '현관앞', '기타' 선택 불가

**붙임 8**

**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안내**

○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### 1.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 '신고/납부' 클릭

### 2. (우측)세금신고의 '종합소득세' 클릭

### 3. '중간예납추계액 신고' 클릭

4. 주민등록번호 '조희' 클릭 → (주소지 전화·휴대전화·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 입력)  
→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선택 → '저장 후 다음이동' 클릭

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기본정보

● 기본사항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

개인  단체  (중요) 개인 또는 단체(중중)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.

주민등록번호 800101 - ●●●● **조희** 성명 귀속년도 2022

주소

주소지 전화 - - 휴대전화 -선택- - -

사업자등록번호 있음 - - - **조희** 상호

사업장 소재지

사업장 전화 - - 전자메일 @ - - 직접입력

● 신고사유 (중요)

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신고사유 1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(1.1~6.30)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사유 2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

● 세무대리인

사업자등록번호 - - 성명 전화번호

대리구분 해당없음 - 관리번호 조정번호

**저장 후 다음이동**

5.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→ '저장 후 다음이동' 클릭

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

●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

소득구분	중수입금액	필요경비	배당가산액	소득금액
이자소득	0			0
배당소득	0		0	0
부동산임대업(주거임대업 제외)의 사업소득	0	0		0
부동산임대업(주거임대업 포함)의 사업소득	1,000,000	0		1,000,000
근로소득	0	0		0
연금소득	0	0		0
기타소득	0	0		0
합계	1,000,000	0	0	1,000,000

●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

소득구분	소득별소득금액	부동산임대업(주거임대업 제외)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	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
이자소득	0	0	0
배당소득	0	0	0
부동산임대업(주거임대업 제외)의 사업소득	0	0	0
부동산임대업(주거임대업 포함) 외의 사업소득	1,000,000		1,000,000
근로소득	0	0	0
연금소득	0	0	0
기타소득	0	0	0
합계	1,000,000	0	1,000,000

**저장 후 다음이동**

6. 신고서 작성완료

●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

● 중간예납세액 계산

7.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	0
8.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	0
9. 추가납부세액	0
10. 중간예납기준액(7+8+9)	0

● 중간예납세액 계산

11. 중간예납기간(1월~6월)의 종합소득금액	1,000,000
12.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(11*2)	2,000,000
13. 이월결손금	0
14. 종합소득공제	0
15. 종합소득 과세표준(12-13-14)	2,000,000
세율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움말 <input type="checkbox"/> ① 금융소득이 있거나 ② 주택매매이자거나 ③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체크합니다.	6.00 %
16. 산출세액	120,000
17. 중간예납 산출세액(16.산출세액/2)	60,000
18. 감면세액	0
19. 세액 공제액	0
20.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	0
21. 수시부과세액	0
22. 원천징수세액	0
23.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계(18+19+20+21+22)	0
24. 계(17-23)	60,000
25. 분납할세액(2개월 이내)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움말	0
26.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	60,000

※ 중간예납 시 (24. 계(17-23)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으며 납부서도 출력되지 않습니다.  
※ 중간예납 시 농어촌특별세,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.

이전 **신고서 작성완료**

○ 손택스(모바일 앱)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

### 1. 신고/납부 > 중간예납추계액 신고

### 2.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

### 3.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

### 4.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

**붙임 9**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(예시)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0. 3. 13.>

##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

① 상 호	△△△	② 사업자등록번호	****-**-*****	③ 성 명	김○○	④ 주민등록번호	*****-*****
⑤ 주 소		서울 종로구 ○○로 *** (전화번호: ****-*****-****)					
⑥ 사업장소재지		서울 종로구 ○○로 *** (전화번호: ****-*****-****)					

증세 간역 예계 납산	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	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 정신고납부세액	⑨ 추 가 납 부 세 액	⑩ 중간예납기준액 (⑦+⑧+⑨)			
	500,000	1,000,000	0	1,500,000			
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	⑪ 중간예납기간 (1월 ~ 6월)의 종합소득금액	⑫ 종합소득금액 (⑪)×2	⑬ 0월 결산금	⑭ 종합 소득공제	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(⑫-⑬-⑭)	⑯ 산출세액 (⑮×세율)	⑰ 중간예납 산출세액 (⑮/2)
	7,000,000	14,000,000	0	1,500,000	12,500,000	795,000	397,500
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				중간예납추계액			
⑱ 감면 세액	⑲ 공제액	⑳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	㉑ 수 시 부 과 세 액	㉒ 원 천 징 수 세 액	㉓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계 (⑱ ~ ㉒)	㉔ 분납 할세액 (㉓-㉔)	㉕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
0	70,000	0	0	0	70,000	327,500	0

㉖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
㉗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

6월 30일 현재 ㉔ 중간예납추계액 ÷ ㉕ 중간예납기준액 =  $\frac{327,500}{1,500,000} = 21.8\%$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65조제3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 
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 
그대료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22년 11월 일  
신 고 인 김○○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 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###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

구비서류	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
------	----------------

#### 작성방법

- ① 추가납부세액란: 「소득세법」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 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, 「국세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② 이월결산금란: 기장(記帳)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산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.
- ③ 신고사유란: 해당되는 □안에 "√" 표시를 하며,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중간예납추계액 계를 ㉕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80g/m<sup>2</sup>]

※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

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

소득구분		총수입금액	필요경비	배당가산액	소득금액
이자소득		0			0
배당소득		0		0	0
사업 소득	부동산임대업	0	0		①
	부동산임대업 외	10,000,000	3,000,000		7,000,000
근로소득		0	0		0
연금소득		0	0		0
기타소득		0	0		0
합 계		10,000,000	3,000,000		7,000,000

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

구 분		소득별 소득금액	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	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
이자소득		0	0	0
배당소득		0	0	0
사업 소득	부동산임대업	②	0	0
	부동산임대업 외	7,000,000		③ 7,000,000
근로소득		0	0	0
연금소득		0	0	0
기타소득		0	0	0
합 계		7,000,000	0	7,000,000

※ 작성요령

1.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: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: ①란의 금액이 결손(-)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.
3. ③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란: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.